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시 의무사항에 대한 연구

이선혜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강사

A Study on the Obligations of the Issuing Bank in Payment Refusal under UCP600

Sun-Hae Lee^a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Daejeon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0 October 2021, Revised 28 October 2021, Accepted 28 October 2021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precaution points for issuing banks in refusing payment under L/C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amination of court cases and official opin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UCP 600 that stipulates obligations of issuing banks in refusing payment. If the issuing bank fail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t shall be precluded from claiming that the documents do not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issuing banks should be well informed of this article. When discrepant documents are presented, however, issuing banks seldom refuse payment because, in most cases, the applicants waive the discrepancies. For this reason, issuing banks have few chances to deal with payment refusal in practice and thus they occasionally end up failing to observe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Such court cases include Kookmin Bank and Korean Exchange Bank (currently Hana Bank) that failed to indicate discrepancies in the refusal notice losing the lawsuits. It should be noted that if issuing banks disregard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UCP 600 and thus fail to indicate discrepancies in the refusal notice, they may face fatal situations in which they must make payment against discrepant documents.

Keywords: Issuing Bank, Preclusion Rule, Refusal Notice, UCP600

JEL Classifications: F19, K29, K33

^a Author, E-mail: sueleesh@naver.com

I. 서론

오늘날 무역거래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으로서 신용장은 그 사용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거래금액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특히, 수입상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수출상이 신용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인 UCP600이 2007년 개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서류심사기준인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745)도 2013년 4월 개정되어 명확한 서류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서류 하자의 발생은 많이 감소되었다. 또한 수익자의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개설의뢰인이 권리포기를 하여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므로 지급거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Byrne, 2021).

이처럼 개설은행은 지급거절 업무를 취급할 기회가 많지 않아 UCP600 제16조의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시 의무사항을 실무자가 준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서류 하자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UCP600 제16조 f항에서는 개설은행이 제16조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였다면 서류 하자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실권규칙 (preclusion rule)이 있다. 실권규칙은 수익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개설은행의 부적절한 지급거절에 실권규칙이 적용되어 서류 하자에도 불구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할 때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사정을 감안하여 권리포기를 하여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개설은행은 자기 자금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개설은행은 실제로 수입물품을 처분하여 신용장 대금을 충당하고자 하나 전액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결국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개설은행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에도 한다.

UCP600 제16조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 하

자로 지급을 거절하기로 하였다면 서류 접수 후 5은행 영업일 이내에 telecommunication으로 제시자 앞으로 지급거절 사실과 하자 사항 및 서류 처분상황을 기재한 지급거절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 관련 잡지인 Documentary Credit World에 우리나라의 외환은행(현재의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이 UCP600 제16조의 지급거절시 개설은행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해 외국에서 패소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이 사건들은 은행 실무자가 UCP600 제16조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였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장에 UCP600이 적용되므로 UCP600 제16조의 규정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해서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UCP600에 모든 것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은행 실무자는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이나 판례의 내용도 파악해야 한다. UCP600은 국제상업회의소라는 국제민간경제단체가 만든 자율적인 규칙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신용장 법률이 없어 법률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는 하나 이 규칙이 소송에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UCP600을 잘못 이해해서 UCP600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신용장통일규칙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컨대 Philadelphia Gear Corp. v. Central Bank (1983) 사건에서는 수익자와 제시은행이 서류의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하면서 하자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Kingho International Corporation Limited v. China Everbright Bank Hongzhou Branch (2016)사건에서는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후 제시 받은 서류를 그대로 반환하지 않았지만 개설은행의 지급거절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급거절시 개설은행의 의무사항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Ha Hyun-Soo(2017), Han Ki-Moon and Park Sae Woon (2013), Lee Jung-Sun

(2017) 및 Park Sae Woon(2014)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중국 판례와 일부 외국 판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한 것으로 최근의 판례 및 ICC 은행위원회의 Opinion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최근의 판례와 ICC 은행위원회 Opinion 및 외국 선행연구를 문헌연구하여 지급거절시 개설은행의 의무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계와 실무계에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상 유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권리 포기과 지급거절 결정 및 통지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할 때에는 UCP600 제16조 c항과 d항에 따라 지급거절을 통지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급거절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Wang, 2019).

1. 권리포기

아주 오래 전에는 개설은행의 서류 심사와 지급 거절은 어떤 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직접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수익자가 서류를 개설은행 창구에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즉시 심사를 하였는데, 하자가 발견되어 지급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은행 창구에 있는 수익자의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하였다.¹⁾ 그러나 현재는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통지 방법이 크게 변경되어 은행 창구를 방문한 수익자 직원에게 구두로 지급거절하는 것을 신용장통일 규칙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

개설은행은 서류가 제시되면 제한된 시간 내

에 심사를 해야 한다. UCP600에서는 제14조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b항에서 서류 접수 후 최장 5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인 경우 UCP600 제15조(complying presentation)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설은행은 UCP600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UCP600 제16조 a항에서는 개설은행은 서류가 일치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권리로 간주되므로 적시의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불일치한 서류에 대하여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부분 개설의뢰인이 권리포기를 하여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UCP600 제16조 b항에서는 개설은행은 일치하지 않는 제시의 경우, 그의 독자적 판단으로 하자의 권리포기(waiver)를 위하여 개설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CP600에는 “waiver”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권리포기(intentional relinquishment of a right)를 의미한다.

UCP600은 가끔 개설은행에 확인은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확인은행도 개설은행과 비슷한 대금지급확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UCP600 제16조 권리포기 규정에서는 개설은행에 확인은행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UCP600 제16조에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사용되고 있고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권리포기를 위한 교섭을 할 수 있으나 확인은행은 그렇지 않다. 확인은행은 개설의뢰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권리포기를 받기 위하여 개설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7).

하자의 권리포기에 관한 규정은 불일치한 제시를 한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은행실무자 사이의 오랜 토론의 결과로부터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수익자가 처음 서류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

1) 이와 같은 과정은 Seaconsar Far E. Ltd. v. Bank Markazi Jomhoury Islami Iran (1998) 사건에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 차례의 보완 제시가 있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지급 거절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 촉발되었다.²⁾

권리포기에는 사전 권리포기(pre refusal waiver)와 사후 권리포기(post refusal waiver)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사전 권리포기는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통지 전에 권리포기를 하는 것이고, 사후 권리포기는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통지 후에 권리포기를 하는 경우이다.

UCP600 제16조에서 개설은행의 하자 권리포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수익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서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과 교섭하고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에 동의할 수 있는 내재적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결정한 후에는 내재적 권리 행사는 중단되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되었다는 것을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익자는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개설의뢰인에게 권리포기를 위한 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개설은행에 지시할 수도 있다 (Byrne, Maulella, Soh and Zelenov, 2010).

UCP600 제16조 b항에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 대한 권리포기 교섭을 그의 독자적인 판단(sole judgement)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두 개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 대한 권리포기 교섭 여부를 완전히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수익자, 제시자,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개설의뢰인과 권리포기를 교섭할 것을 지시한 경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 둘째는 서류의 일치성 여부 결정은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을 상실당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개설의뢰인의 동의 없이 권리포기를 할 수 있다.³⁾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는 개설은행이 동의해야 성립된다. UCP500 제14조 b항에서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교섭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설은행의 동의를 있어야 권리포기가 성립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고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⁴⁾에서 기술하고 있었다.

UCP600에서는 제16조 c항 (iii)(b)에서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를 받고 이것을 수락하기로 동의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Rika Global Impex Ltd. v. Oriental Bank of Commerce (2010)사건에서 인도법원은 UCP6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개설의뢰인이 권리포기를 하였지만 개설은행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포기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설의뢰인이 권리포기를 하면 개설은행이 이것에 동의하지만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대지급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Gotoh and Yoshino, 2008).

UCP600 제16조 b항에서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권리포기를 교섭한다고 하여 개설은행의 최장 서류심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설의뢰인과의 권리포기 교섭 기간을 포함하여 개설은행은 최장 5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Byrne, et al, (2010)은 개설은행은 서류 심사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개설의뢰인과 권리포기를 교섭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에 권리포기 교섭을 위한 추가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DC-PRO 2005 LC Market Intelligence Survey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 제시된 서류에서 수입은 평균 52%, 수출은 56%의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survey 응답자 중 한 사람은 첫 제시 후 서류 하자가 보완된 후에는 하자가 있는 서류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LC Market Intelligence Survey, 2006).

3)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개설의뢰인이 파산하였지만 상품의 가치가 신용장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결정이 정당화된다.

4)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R418 (UCP500) (reference to previous ICC Opinions, which indicated that receipt of a waiver from the applicant does not bind the issuing bank to honour the documents)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Hoque (2016)는 UCP600 제16조 b항에 다음과 같은 사전 권리 포기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issuing bank must sent a “status report” not later than close of fifth banking day only mentioning the discrepancies that the issuing bank convey to the applicant or similar.”

UCP600에 이 문구가 추가되면 제시자는 5영업일 이내에 서류의 하자 사항을 알게 되고, 제시자가 현황보고서(status report)에 표시된 하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개설은행에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면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 현황보고서는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통지가 아니라 서류심사 결과와 추후 과정에 대한 통지이다.

UCP600에 앞에서 제안한 제16조 b항의 문구가 추가되면, 제16조 d항의 지급거절 통지의 제한시간을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 조항은 개설의뢰인에게 권리포기를 교섭하지 않는 개설은행, 지정은행 및 확인은행에 대한 규정이고, 다른 한 조항은 개설의뢰인에게 권리포기를 교섭하는 개설은행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권리포기를 교섭할 때에는 지급거절 통지 기간을 현재의 서류 접수 후 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i)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nd confirming bank and the issuing bank (not acting under sub-article 16(b)), if any, must give the notice required in sub-article 16(c)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fif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or similar.

(ii) The issuing bank acting under sub-article 16(b) must give the notice required in sub-article 16(c)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ten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or similar.

제16조 c항 (iii) (b)는 지급거절시 개설은행의 서류 처분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권리포기를 교섭하고 있고,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c항 (iii) (b)항의 서류 처분 방안을 삭제하고, 개설은행이 5영업일 이내에 개설의뢰인에게 통지한 하자 사항을 현황보고서의 형태로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개설의뢰인이 10일 이내에 권리포기를 하지 않으면 제시자에게 지급거절을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Hoque (2016)의 제안을 UCP600을 개정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단일의 지급거절 통지

UCP 600 제16조 c항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지급거절을 결정하였을 때 제시자에게 단일 통지(single notice)로 지급거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후에 다른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TA802rev R821).⁵⁾ 이 조항은 개설은행이 전화로 지급거절 통지를 하고 나중에 팩스로 지급거절 통지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시은행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거나 서류 처분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⁶⁾ UCP5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 대한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⁷⁾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UCP600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URDG758 제24조 d항도 보증은행은 단일

5)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2007) 72쪽에서 동일 제시에 대하여 복수의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음의 판례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Banker Trust Co. v. State Bank of India (1991)
Amixco Asia (Pte) Ltd v. Bank Bumpiputra Malaysia Bhd (1992)

6) Total Energy Asia Ltd. v. Standard Chartered Bank (2006)사건에서 확인은행은 제시은행에 전화로 지급거절을 통지하고 서류 처리 방안을 논의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정식으로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법원은 이와 같은 업무처리를 단일 지급거절통지로 판결하였다.

7) ICC Banking Commission R427 (UCP500).

통지로 지급 거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SP98 제5.03조도 개설은행이 적시에 지급 거절통지를 하지 못하면 대금지급거절 권리가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개의 표지서류 또는 환어음으로 동시에 제시된 것은 하나의 제시로 보지 않으므로 각각의 표지서류 또는 환어음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지급거절을 통지해야 한다.⁸⁾⁹⁾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려는 의도만 보이는 것은 지급거절 통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지급거절통지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개설은행과 제시은행 또는 수익자와의 사이에 될 수 있다. 개설은행이 정식으로 지급거절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부분적으로 서류 심사가 된 부분에 대한 통지는 UCP600 제1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지급거절 통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설은행이 서류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자의 문의 전화에 대하여 지급거절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면 안 되고, 서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지급거절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응답을 해야 된다¹⁰⁾.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v. United California Discount Corp. (2010)사건에서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Western Division 은 ISP98이 적용되는 이행보증신용장(performance standby credit)에서 신용장 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익자(UPS Capital Business Credit)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데, 개설은행(United California Discount Corp.)이 지급거절 통지를 할 때 신용장 원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하자 사항을 주장하지 않았다. Snyder 판사는 개설은행이 처음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주장하지 않았던 하자를 수익자가 다시 서류를 제시하였을 때 동일한 서류의 하

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China New Era International Ltd. v. Bank of China (H.K.)(2010)사건에서 UCP600이 적용되는 상업신용장에서 지정은행(First Commercial Bank)이 수익자(Flexux Computer Technology Inc.)로부터 각서(indemnity)를 받고서 하자 있는 구상조건부(with recourse)로 서류를 매입하였는데, 그 후 수익자가 두 번의 수정된 서류를 매입은행에 다시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하자가 보완된 후 매입은행은 개설은행(Bank of China)에 하자 없는 서류를 송부하였다.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 받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신용장대금 상환청구에 대하여 매입은행이 처음에 하자 있는 서류를 매입한 것은 매입(negotiation)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신용장대금 상환을 거절하였다. 법원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자가 매입은행에 첫 번째 제시한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U.S. Bank National Ass'n v. Bankplus (2010)사건에서는 UCP6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에서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유효기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였는데, 개설은행은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을 법원이 결정하였다.

Swiss Singapore Overseas Enterprises Pte Ltd. v. China Citic Bank Corp. Ltd. Xiamen Branch (2013)사건에서 UCP600이 적용되는 상업신용장이 발행되었는데, 수익자(Swiss Singapore Overseas Enterprises Pte Ltd.)는 하자 있는 서류를 매입은행(Bangkok Bank Public Company Ltd.)에 제시하였다. 매입은행은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입을 하지 않고 서류를 개설은행(China Citic Bank Corp. Ltd.)으로 송부하였다.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송부한 표지서류에 서류의 하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개설은행은 서류 접수 후 매입은행이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통

8) ICC Banking Commission R670 (UCP500).

9) 여러 건의 선적이 된 경우 한 개의 표지서류 또는 환어음에 따라 제시되었다면 이것은 단일 제시로 간주된다.

10) ICC Banking Commission R694 (UCP500)에서 개설은행이 서류의 하자가 아니라 상품 품질에 대한 불만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의견이 포함된 메시지를 제시은행에 송부한 것은 지급거절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지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상환청구 허용 통지를 보낸 다음 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이전의 상환청구 허용을 취소한다고 매입은행에 통지하였다. 법원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상환청구를 허용한 후 추후 통지에서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Swiss Singapore Overseas Enterprises Pte Ltd. v. China Citic Bank Corp. (2014)사건에서 개설은행은 처음에는 제시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통지하였으나, 동일한 신용장에 대한 두 번째 SWIFT 통지에서 지급거절을 하고, 세 번째 SWIFT에서 지급거절의 근거를 통지하였다. 1심 법원은 개설은행은 단일의 지급거절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SWIFT 통지는 이중 지급거절 통지에 해당되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항소심에서 항소법원은 지급거절이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였으나, 개설은행의 부분적인 대금지급을 수익자가 동의하였으므로 타협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용장 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수익자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이 네 개의 사건에서 개설은행은 최초의 지급거절 통지에서 주장하지 않은 하자를 추후 통지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거절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결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제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수익자는 지급거절 통지서를 보고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의 근거를 알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Byrne, 1998).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TA596 R672 (UCP500)에서는 개설은행이 처음 지급거절을 통지할 때 명시하지 않았던 하자를 추후 지급거절 통지를 할 때 하자로 명시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ICC Opinion은 개설은행이 단일 지급거절 통지를 하면서 모든 하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므로 추후 통지를 할 때 기존 서류를 근거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 758 제24조에서도 단일 지급거절 통

지를 할 수 있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하자를 통지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은행이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있어 하자수수료(discrepancy fee)를 징수할 때에는 지급거절 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지급통지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발견한 하자를 제시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하자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하자 사항을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제시은행에 통지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통지할 수 있다(ICC Banking Commission TA802rev R821).

3. 유효한 지급거절 통지의 요건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통지할 때에는 UCP600 제16조 c항과 d항에 명시된 유효한 지급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유효한 지급거절 통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결제 또는 매입 거절 사실 표시

UCP600 제16조 c항 (i)에서는 은행의 지급거절 통지에는 지급거절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TA.878rev R892에서는 개설은행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거절 통지를 한 사건이 소개되었는데 지급거절 통지로 간주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은 지급거절에 대한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Voest-Alpine Trading USA Corp. v. Bank of China (2002)사건에서 UCP500이 적용되는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Bank of China)은 제시된 서류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는 것을 기재하였으나 지급 거절한다는 것을 기재하지 않았다.¹¹⁾ 수익자(Voest-Alpine Trading USA Corp.)가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요건이 불비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법원에 신용장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개설

11) 이 사건에서 신용장 상품 가격이 신용장 개설 후 크게 떨어졌다.

은행의 통지에 하자가 기재된 것만으로는 지급 거절 통지로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기 위하여 접촉하고 있으며, 개설의뢰인과 협의한 후 수리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을 뿐 지급거절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Habib Bank v. Cent. Bank of Sudan (2006) 사건에서도 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시 서류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으나 UCP290이 적용되는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Central Bank of Sudan)은 매입은행(Habib Bank)에 매입을 수권하면서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10%만 매입은행에 상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을 상대로 신용장 대금 잔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영국 법원은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에 따라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하자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개설은행은 지급 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있는 서류를 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개설은행은 지급거절통지를 할 때 지급 거절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기재된 하자가 지급거절을 정당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URDG758 제24조 d항에서도 보증은행은 지급거절 통지를 할 때 지급거절 사실을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UCP600 제16조 c항은 UCP500 제14조 d항보다 더 공식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은행이 지급 거절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지급거절에서 엄격일치의 기준은 서류의 엄격일치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지급거절통지에는 지급거절 사실과 지급거절하게 된 하자 및 서류의 처분상황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Travelers Indem Co. v. U.S. Bank, N.A., 2006).

지급거절 통지서에 지급 거절한다는 표시는 지급거절 통지서 제목에 "Notice of Refusal"이라고 기재되면 충분하다(Byren et al., 2010).

또한 개설은행이 SWIFT MT734(Advise of Refusal)를 이용하면 이것은 지급거절통지에만 이용되는 전문이어서 지급거절 사실 기재 난이 없으므로 별도로 지급 거절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산 상의 장애 등 기타 사유로 MT734를 이용할 수 없어 MT799나 MT999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개설은행이 지급 거절한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2) 모든 지급거절 사유 명시

UCP 600 제16조 c항 (ii)에서는 지급거절을 할 때에는 지급거절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하자(each discrepancy)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 국제상업회의소 발간 UCP600 해설서에서는 2개 이상의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지급거절통지를 할 때 이 중 일부 하자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모든 하자를 기재해야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통지를 할 때 반드시 발견된 모든 하자를 명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류에 여러 개의 하자가 있었는데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의 타당한 사유가 되는 한 개의 하자를 명시하더라도 지급거절은 정당화된다(Byrne, et al, 2010). URDG758 제24조 d항과 ISP98 제5.02조에도 UCP600의 규정과 유사하게 지급거절을 통지할 때 모든 하자를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거절 통지시 "invoice not as per LC" 또는 "conflicting data between documents"와 같이 하자를 기재하는 것은 하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급거절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7).

Toyota Tsusho Grp. v. Comerica Bank (1996)사건에서 법원은 UCP400이 적용되는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Comerica Bank)이 항공운송장의 선적기일이 신용장의 선적기일인 1994년 2월 7일보다 늦은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지급거절 사유로서 "late shipment"를 주장

12) UCP500 제14조 (d)(ii)에서는 UCP600 제16조 (c)(ii)에 규정된 'each discrepancy' 대신에 'all discrepancies'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두 개의 규정 간 본질적인 의미의 차이는 없다(Ellinger and Neo, 2010).

하였다. 법원은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할 때는 지급거절의 근거된 서류와 서류상 하자를 명백하게 기재해야 되어야 하는데, 선적기일이 1994년 3월 30일로 3차 신용장 조건변경에서 연장되었기 때문에 “late shipment”는 지급거절의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Byrne, 1998).

Philippine Commercial International Bank v. Korea Exchange Bank (2011)사건에서 개설은행(외환은행 홍콩지점)은 제시은행인 Philippine Commercial International Bank에 서류의 하자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지 하자(unclean)가 있다고 지급거절 통지하였다. 필리핀 법원은 개설은행이 서류의 하자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Heritage Bank v. Redcom Laboratories, Inc. (2001) 사건에서 UCP500이 적용되는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Heritage Bank)은 수익자(Redcom Laboratories, Inc.)에게 법원의 인정선(injunction) 때문에 대금지급이 금지되었다고 통지하였고, 나중에는 인정선이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 법원은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하면서 서류 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제기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판결하였다.

Hamilton Bank N.A. v. Kookmin Bank (2001)사건에서 UCP500이 적용되는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국민은행)은 플로리다 매입은행(Hamilton Bank N.A.)으로부터 서류를 제시 받았는데, 지급거절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하자를 기재하지 않고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다고 기재한 지급거절 통지를 하면서 서류를 매입은행에 반환하였다. 매입은행은 하자를 보완하여 두 번째 제시를 하였는데 국민은행은 특정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SWIFT로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법원은 개설은행이 첫 번째 지급거절을 할 때 서류 누락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TA 884rev R906의 사건에서는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다음의 이유 때문에 지급거절을 한다고 기재하였다. “LOCAL AND INTER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INTERNAL POLICY FOR ATM/CTF AND FOREIGN SANCTIONS IN ACCORDANCE WITH OUR L/C TERMS.” ICC Opinion에서는 위의 금융제재(sanction) 조치에 근거하여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서류 상 하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UCP600 제16조의 지급거절 통지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금융규제가 UCP600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UCP600 제16조 f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개설은행의 하자 서류에 대한 지급거절권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통지를 한 후 이전의 지급거절 통지는 무시하고 새로 보낸 지급거절 통지를 유효한 지급거절 통지로 간주하라는 전문을 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새로운 지급거절 통지는 무시된다(Park Sae-Woon and Jung Yong-Heyuk, 2017).

수익자가 신용장 유효기일과 선적일 후 서류 제시기간 이내에 제시한 하자 보완서류에 새로운 하자가 있다면 개설은행은 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ICC Banking Commission R329 under UCP500).

Dickerson OL2 LLC v. Natixis, New York Branch (2020)사건에서 개설은행은 적시에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는데 지급거절 사유로 “sufficient funds are not available for drawing under the Letter of Credit to satisfy the Drawing Request at this time”를 기재하였는데, 법원은 지급청구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부당하고 결정하였다. 법원은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절차는 타당하지만 지급거절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 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서류의 처분상황 명시

UCP600 제16조 c항 (iii)에는 하자 서류 처분에 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 선택안을 제시하고 이 중 한 가지를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통지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the bank is holding the documents pending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presenter.

(b) the issuing bank is holding the documents until it receives a waiver from the applicant and agrees to accept it, or receives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presenter prior to agreeing to accept a waiver.

(c) the bank is returning the documents.

(d) the bank is acting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previously received from the presenter.

네 가지 선택안 중에서 (b)와 (d)안은 UCP600에서 새로 도입된 것이다. UCP600 제16조 c항 (iii) (b)에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거나, 또는 권리포기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기 전에 제시자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b)에서 명시한 대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를 교섭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개설은행이 권리포기를 개설의뢰인과 교섭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가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기 전에 제시자가 서류 처분에 대하여 다르게 요청할 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제시자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처리하면 된다.

신용장 실무자에게 제16조 c항 (iii)(b)의 문구가 낯선 것이 아니다. 이 문구는 UCP5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이 지급 거절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7).

UCP500 제14조에서는 UCP600 제16조 c항 (iii)(b)의 하자 서류 처리방안이 규정되지 않아 UCP5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서는 그와 같은 처리는 조건부 지급거절이 되므로 지급거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영국과 홍콩 법원에서 판결하였다(Fox and Shour, 2011). UCP500이 적용되는 신용장 사건인 Credit Industriel et Commercial v. China Merchant Bank (2002) 사건에서 개설은행이 다음과 같은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

"We refuse the documents according Art.

14 UCP no. 500. Should the docs being accepted by the applicant, we shall release the docs to them without further notice to you unless yr instructions to the contrary received prior to our payment. Documents held at yr risk for yr disposal."

영국 법원은 이 지급거절 통지는 UCP500 제14조 d항에 따르지 못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서류가 제시은행에 반환되지도 않았고, 그들의 지시 하에 보관되지도 않았다. 개설의뢰인이 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제시은행에 통지하지 않고 개설의뢰인에게 서류가 인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부 성격 지급거절은 지급 이전에 반대 지시가 허용될 가능성을 없게 만든다."

이와 같은 영국 법원의 견해는 Cooperative Centrale Raiffeisen-Boerenleenbank BA v. Bank of China(2001)사건에서 High Cour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에서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신용장에 UCP600이 적용되면 이것은 UCP600 제16조 c항 (iii)(b)의 서류 처분방안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지급거절 통지로 인정된다.

UCP600 제16조에서 c항 (iii)(b)의 서류 처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서류 처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신용장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ICC Banking Commission TA888rev R904).

"IF DOCUMENTS PRESENTED UNDER THIS L/C ARE FOUND TO BE DISCREPANT AND WE HAVE NOT RECEIVED PRESENTER'S DISPOSAL INSTRUCTIONS FOR THE DISCREPANT DOCUMENTS PRIOR TO RECEIPT OF THE APPLICANT'S WAIVER OF DISCREPANCIES, WE SHALL RELEASE THE DOCUMENTS TO THE APPLICANT WITHOUT NOTICE TO THE PRESENTER AND WE WILL HAVE NO LIABILITY TO THE PRESENTER IN RESPECT OF ANY SUCH RELEASE."

위와 같은 신용장조건은 제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에 동의하고 서류를 인도하였다면 어떤 형태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UCP600 제16조에서 하자 서류의 처분 방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UCP6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신용장 조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UCP600은 개설은행이 제시은행에 대한 권리포기 통지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Zhang, 2009). 그러나 이 시점의 중요성(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에 동의한 이후에는 수익자는 서류 처분권을 상실함)을 고려할 때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에 대한 개설은행의 동의 시점이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권리포기 동의 통지서를 개설의뢰인에게 송부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개설은행은 권리포기 동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지급거절 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보낸 것과 동일한 방법(telecommunication 또는 이것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개설의뢰인에게 보낼 수 있다. 이것은 수익자가 서류 처분에 대한 추후 지시를 개설은행에 보낼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그의 지시를 개설은행에 보낸 시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개설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지시를 받기 전에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될 것이다.

수익자의 추후 지시 시점과 개설은행의 권리포기 동의 시점은 신용장거래의 물품 가격이 급등할 때에는 매우 중요하다. 개설의뢰인은 물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권리포기를 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싶고, 반면에 수익자는 서류를 반송 받아 제3자에게 전매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익자의 서류 반송에 관한 추가 지시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에 동의하여 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인도하였다면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상품 가격의 등락이 심한 물품의 경우에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서류를 인도하기 전

에 수익자의 추가 지시 도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TA, 892rev R914에서는 개설은행이 SWIFT MT799로 지급거절 통지하면서 이것을 SWIFT MT734로 취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 지급거절 통지에는 지급거절 사실과 서류 처분 상황을 명시하지 않았다. ICC 은행위원회는 MT799로 지급거절 통지하면서 “Advice of Refusal”이라는 제목이 있는 MT734로 취급해 달라고 하였더라도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한다는 사실과 서류 처분 상황을 명시해야 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CC 은행위원회는 개설은행이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mwest Surety Insurance Co. v. Concord Bank (2003)사건에서 UCP5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Concord Bank)은 지급거절 통지서에 수익자(Amwest Surety Insurance Co.)의 처분권 하에 서류를 송부하거나 또는 반환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서류의 처분에 대하여 문의하지 않았다. 수익자는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장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개설은행이 지급거절통지서에 서류의 처분 사항 기재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서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Labarge Pipee & Steel Co. v. First Bank (2008)사건에서 UCP400이 적용되는 상업보증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First Bank)은 수익자(Labarge Pipee & Steel Co.)에게 지급거절 통지를 보냈다. 그러나 Amwest Surety Insurance Co. v. Concord Bank (2003)사건과 마찬가지로 개설은행은 지급거절 통지서에 수익자의 처분권 하에 서류를 보관하든지 아니면 수익자에게 반송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신용장에서는 수익자가 신용장 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수익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팩스로 송부 받았다. 팩스로 송부된 신용장은 신용장 원본이 아니므로 수익자가 신용장 원본이 누락되었다는 하자를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원은 수익자가 하자 보완이 불가능하더라도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통지하면서 서류의 처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서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ISP98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의 처분상황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지급 거절할 권리가 배제되지 않는다(Hei, 2019). URDG 758에서도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98(ISP98)과 동일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지급거절 통지서에 서류의 처분상황을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Byrne, 2012). ISP98 또는 URDG758이 적용되는 보증 신용장 또는 보증서에서는 수익자 제시 서류가 권리서류인 경우가 거의 없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적시의 지급거절 통지

UCP 600 제16조 d항에서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telecommunication 또는 이것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지급거절 통지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통지를 할 때 허용된 제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지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Avidon, 2011).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TA782 R823 사건에서 개설은행은 서류 접수 후 14일이 되어서 지급거절을 통지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유효기일이 경과(L/C expired)하여 서류가 제시되었으므로 UCP600 제1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용장 유효기일이 종료되는 지정은행인 확인은행에는 유효기일 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었으므로 개설은행의 유효기일 종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Opinion에서는 개설은행은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거절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결정하였다.

Federal Bank Ltd. v. VM Jog Engineering Ltd. (2002)사건에서 UCP400이 적용되는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매입은행(Federal Bank Ltd.

Pune, India)은 표지서류에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다고 기재한 서류를 개설은행(Bank of Maharashtra, Pune, India)에 송부하였다. 2개월 후 개설은행은 그들이 나중에 발견한 하자를 이유로 매입은행에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 인도 법원은 개설은행이 적시에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법원은 UCP400에서는 개설은행에 서류 심사를 위하여 합리적인 시간(reasonable time)이 부여되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합리적인 시간을 경과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인도 법원은 영국 법원의 판례(Banker's Trust Ltd. v. State Bank of India, 1991)에서 인정된 3일을 서류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시간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개설은행이 권리포기를 위하여 개설의뢰인과 교섭하는 것이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UCP500 제14조 c항의 규정도 적용하였다.

UCP400에서는 개설은행의 서류 심사시간으로 “합리적 시간”을 허용하였다. UCP500에서는 7은행영업일 이내의 합리적인 시간이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UCP600 제14조 b항에서는 최장(maximum) 5은행영업일로 단축되었다. 그러면 서류심사시간으로 최장 5영업일이 허용되었는데, UCP600에서 “최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서류가 간단하여 서류심사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때 기간 단축 여부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UCP600 해설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문제는 개설은행이 5은행영업일 이전에 지급거절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수익자에게 하자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하여 5은행영업일이 되는 일자에 지급거절 통지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Byrne et al., 2010).

Fung (2008)은 UCP600 제14조 b항에 서류 심사시간 5영업일에 “최장(maximum)”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은 개설은행이 서류 심사를 완료하자마자 대금지급을 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개설은행이 하루 만에 서류심사를 완료하여 일치하는 서류라고 판단하였다면 5은행영업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이내에 제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한 지급거절 통지를 지연한 것이 문제가 된 소송이 있다. Price & Pierce International Inc. v. Cimex U.S.A. Inc. and Hanil Bank (1988) 사건에서 UCP290이 적용되는 신용장을 개설한 한일은행(현재 우리은행)이 수익자에게 하자 보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하여 매입은행(Morgan Bank)에 지급거절 통지를 최대한 지체한 것이 인정되어 미국 법원은 한일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Kim Han-Soo and Park Sae-Woon, 1992).

Millennium Wires Ltd. v. The State Trading Corp. of India Ltd (2015)사건에서 인도 대법원은 개설은행이 서류 접수 후 19일에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UCP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5은행영업일이라는 서류심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Byrne, Kozakowski and Berger, 2018).

Indoafri Exports Private Ltd. v. Citibank, N.A.(2017) 사건에서 신용장에는 UCP500이 적용되어 확인은행은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지급거절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10영업일에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 1심 법원인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와 항소법원인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는 확인은행의 지급거절 통지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수익자의 확인은행에 대한 대금지급 청구 소송 제기가 6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수익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ISP98 제5.01조에서는 비합리적이지 않는 시간 이내에 지급거절 통지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영업일 이내의 통지는 비합리적이지 않고, 7영업일을 초과하면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영업일을 초과하여 지급 거절하는 것은 지급거절 권한 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 URDG758 제20조에서는 UCP600과 마찬가지로 보증은행은 서류 제시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거절 통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UCP600 제16조에 따라 지급거절통지는 원칙적으로 telecommunication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SWIFT 메시지, telex, 팩시밀리, email, 전화 통화가 포함된다. Telecommunication에 전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Hing Yip Hing Fat Co., Ltd. v. The Daiwa Bank Ltd. (1991)사건에서 법원은 전화가 telecommunication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화는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나중에 지급거절을 확인하는 서면을 보낼 것을 권고하였다. 이 견해는 2006년 홍콩 법원의 Total Energy Asia Ltd. v. Standard Chartered Bank (Hong Kong) (2006) 사건에서도 인정되었다. 홍콩 법원은 전화 통보 후 팩스로 확인 전문을 보낸 것은 UCP500 제1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Seaconsar Far East Ltd. v. Bank Markazi Jonbouri Islam Iran (1998)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수익자의 선임대표자가 개설은행 창구에 있어, 개설은행이 그 선임대표자에게 구두로 지급거절을 통지하고, 추후 다른 서면으로 지급거절 통지가 되지 않았는데, 영국 법원은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서 구두 통보를 telecommunication으로 인정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허용하는 것은 신용장 계약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Telecommunication으로 통지하는 이유가 수익자가 하자를 가능한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대면(face-to-face)으로 한 구두 통지가 그와 같은 목적에 부합된다(Fung, 2008).

MAM Apparel & Textile Ltd. v. NCL Worldwide Logistics USA, Inc. (2020)사건에서 수익자인 MAM Apparel & Textile Ltd.는 개설은행인 Bank Leumi USA가 telecommunication이 아닌 SWIFT로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지급거절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SWIFT가 telecommunication에 해당되므로 수익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신용장에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5영업일은 밤 12시에 종료된다. 영미법에서는 일자를 결정할 때 midnight rule이 있다. 따라서 개설

은행은 5영업일의 밤 12시 이전에 지급거절 통지를 하면 된다.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R. 424 (UCP500)에서는 지급거절 통지는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 밤 12시 이전에 보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UCP600 제14조 b항에 따라 개설은행이 5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자 앞으로 지급거절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수익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 상하자를 사유로 지급거절을 통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유효기일과 선적일 후 서류제시 기간 이내에는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Mann, 2000; ICC Opinion TA764rev R,470)¹³⁾. 이 때 수익자가 제한시간 이내에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서류를 제시하려면 신속하게 지급거절 통지를 받아야 한다. 신용장에 첫 제시를 할 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특별조건¹⁴⁾이 없다면 다시 제시할 때 개설은행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Park Sae-Woon, 2014).

둘째, 수익자가 신속하게 지급거절 통지를 받는다면 현재 운송 중에 있지만 수입지에 이미 도착한 물품의 처리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지급거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익자가 서류를 적시에 반송 받는 것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Park Sae-Woon, 2014; Wang, 2018).

셋째,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가 있으면 매입은행이 매입을 하여 이미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경우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신속하게 받아야만 대금회수가 쉬워진다. 오랜 기간이 지나 그 대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수익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매입은행의 대금회수가 불

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Park Sae-Woon, 2014).

Ⅲ. 지급 거절된 서류의 반환

1. 서류의 소유권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받기 전까지는 서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ale Continuation Ltd. v. Austin Taylor & Co Ltd. (1967)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매도인은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면 서류 소유권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다. 그의 권리는 환어음에 따라 대금을 지급을 받는 것이다. 상품의 소유권은 매입자에게 이전되나, 매입은행은 매입자에 대하여 질권자의 권리를 갖는다. 은행은 매입자가 환어음 대금과 이자를 은행에 지급할 때까지 그 서류의 질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수익자는 서류 소유권을 매입자에게 양도할 의향을 가졌지만,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수익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Wang, 2018). 호주의 The Stone Gemini (1999) 사건에서 호주연방법원은 개설은행이 서류를 수리할 때까지 선하증권을 보관하지만 대금지급을 거절한 상황에서는 제시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이 지급 거절한 경우 수익자가 서류 소유자이고,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수탁자로서만 행동해야 하므로, 수익자의 허락 없이 서류를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개설은행은 지급거절 후 서류 처분권을 가진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Zhang, 2009).

2. 개설은행의 서류 반환

UCP600 제16조 c항 (iii)(c)에서는 개설은행

13)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R97 (UCP400).

14) 다음의 신용장 조건은 수익자의 하자 보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익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 Documents must be correct on first presentation. Correction of documents is not permitted.
- Negotiating bank must certify that documents were correct on first presentation

은 지급거절 통지서에 제시자에게 서류를 반환하는 것으로 명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CP600 제16조 e항에서는 은행이 지급거절 통지를 보낸 후 서류를 제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은행이 서류를 반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R214(UCP500)에서는 서류를 받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류를 반환해야 된다고 결정하였다.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TA518 (UCP500)에서는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통지를 하고, 서류를 반환하였으나 선하증권 원본 3통 중 1통과 2통의 상업송장을 누락하였다. Opinion에서는 개설은행은 받은 모든 서류를 받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서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비록 이 의견은 UCP500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UCP600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TA.744rev R744 사건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를 반환한다고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본 선하증권을 개설의뢰인 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함으로써 개설의뢰인이 상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함으로써 제시은행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형태의 부수의 원본과 사본을 반환할 수 없었다. Opinion에서는 개설은행은 지급거절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서류를 반환할 수 없으므로 서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TA891rev R905 사건에서는 개설은행이 제시은행 앞으로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고, 지급거절 통지서에 몇 개의 하자 사항을 기재하고, UCP600 제16조 c항(iii)(b)에 따라 서류를 처리하겠다고 명시하였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를 받아 개설은행이 권리포기에 동의하거나 또는 개설의뢰인이 권리포기에 동의하기 전에 제시은행으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그 후 제시은행은 개설은행에 서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개설은행은 제시은행으로부터 받은 모든 서류를 동일한 방식으로 반환하지 못하였다. ICC Opinion에서는 UCP600 제16조 f항에 따라 개설은행은 서류 하자를 주장하지 못하고 제시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Emirates Bank Int'l PJSC v. Credit Lyonnais (Suisse) S.A. (2004)사건에서 개설은행(Emirates Bank Int'l PJSC)은 서류를 개설의뢰인(Solo Industries Ltd.)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제시된 대로 제시은행(Credit Lyonnais (Suisse) S.A.)에게 서류를 반환할 수 없었다. 스위스 법원은 개설은행이 제시권자의 처분권 하에 서류를 보관하지 못하였으므로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사기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것이 명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개설은행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Fortis Bank v. Indian Overseas Bank (2010)사건에서 개설은행인 Indian Overseas Bank는 확인은행인 Fortis Bank가 지급거절된 서류를 반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속하게 반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 재판의 증인인 Gary Collyer와 Rogers Jones는 개설은행이 서류 반송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반환되어야 하므로 1-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은행관행이라고 증언하였다.

UCP600 제16조 c항 (iii)(a)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설은행은 수익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 UCP600 제16조 c항 (iii)(c)에서는 수익자에게 서류를 반송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추가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UCP600 제16조 e항에서는 개설은행은 언제든지(any time)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서류가 지급거절 되었을 때 제시자와 수익자가 어떻게 서류를 처리되어야 할지 개설은행에 지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오랜 원칙을 명정한 것이다(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R. 410 (UCP500)¹⁵⁾). 그런데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개설은행이 장기간

15) Having given a formal notice of rejection, the onus is on the presenter to provide further instructions and encourage dialogue between the applicant and beneficiary.

반송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지급거절통지와 관련되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 상반된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므로, 신속하게 서류를 반송해야 된다(Byrne, 2010).

ISP98 제5.06조에서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 또는 제시인으로부터 서류의 처분에 대하여 지시를 요청한 후 10영업일이 경과해도 두 당사자로부터 추가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 거절된 서류를 제시자에게 반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에서는 태만하거나 비합리적인 지연을 장려하지 않으므로 개설은행은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개설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 수익자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할 때의 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시받은 경우이다(UCP600 제16조 c항(iii)(d)). 수익자가 신용장 개설을 통지 받은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류 처분에 대하여 개설은행에 지시하였다면 사전 지시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사전 지시의 범위에 은행과 수익자 간의 현재의 신용장 거래가 아니라 이전의 신용장 거래에서의 서류 처리에 대한 지시를 현재의 신용장거래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이다. 개설은행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재의 신용장거래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다면 이전 신용장 거래에서의 서류 처분에 관한 지시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자마자 서류 처분에 대하여 다른 지시를 보냈다면 개설은행은 이전 거래에서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익자의 새로운 지시에 따라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Byrne et al., 2010).

수익자가 대금을 지급을 받기 전에 어떤 다른 지시가 없다면 수익자로부터 추후 지시 없이 개설의뢰인에게 서류를 인도할 수 있다고 수익자가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지시는 매도인의 처분권 하의 무조건적인 지시의 원칙과 부합하고, 또한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허용된다. 그와 같은 지시는 매입자와 매도자 간에 차후에 합의에 도달해 서류가 최종적으로 수리될 때 서류 처분에 관한 해결

책이 된다. 이것은 수익자의 서류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모든 당사자에게 지급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UCP600 c항(iii)(c)의 규정에 따라 제시자의 지시와 관계없이 개설은행은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거절된 서류는 수익자의 재산이므로 개설은행은 서류를 가능한 한 빨리 반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ox and Shour, 2011).

IV. 실권규칙(Preclusion Rule)

1. 개요

UCP600 제16조 f항에서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UCP600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제시서류의 하자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신용장에 따른 결제 또는 매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CP600 제16조 f항의 규정을 흔히 실권규칙(preclusion rule)이라고 부르는데, UCP600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 있는 규정 중 하나이다. 이 조항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적시에 적절한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면 서류 하자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장 시스템에 엄격함을 가져왔다. 개설은행이 신속하게 지급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은 초기의 UCP에 규정되었지만 실권규칙은 UCP290(1974년) 제8조에 처음으로 도입된 후 계속 규정되고 있다(Wang, 2018).

그런데 이 규정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게만 적용되고 지정은행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¹⁶⁾ 신용장 유효기일이 경과된 경우에 개설

16) The Bank of East Asia (China), Da Lian Branch v. Da Lian Hui Feng Da International Trade Co. Ltd. (2014) 사건에서 수익자는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였고, 지정은행은 다시 이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시하였다. 개설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1개월 후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거절 통지서를 서면으로 UCP 600 제16조 d항에서 규정한 허용시간인 서류 제시 후 5영업일이 경과된 후 제시자에게 통지하였다. 법원은 지정은행이 허용된 제한 시간 이내에 지급

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적시의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신용장 유효기일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어 실권규칙이 적용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UCP600에는 이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권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개설은행은 신용장 유효기일이 경과되었다면 지급거절 통지에 신용장 유효기일 경과(L/C expired)라는 하자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신용장 유효기일이 경과되었다더라도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UCP600 제16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신용장 유효기일이 경과되면 수익자는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유효기일 경과를 지급거절 통지서에 기재하는 것은 제시자에게 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R.331 (UCP500)).

UCP600의 실권규칙이 미국의 일부 관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Song, 2014). 신용장통일규칙은 법률이 아니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법과 상충되면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Philadelphia Gear Corp. v. Central Bank (1983)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은 수익자와 제시은행이 이미 서류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하면서 하자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Lease American Corp. v. Norwest Bank Duluth, N.A. (1991)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수익자가 서류의 하자를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하거나 반환할 것이냐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개설은행의 하자 있는 서류의 지급 거절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미국 관례에서도 실권규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Heritage Bank v. Redcom Laboratories (2001)사건에서 법원은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 기간 경과로 하

자를 통지하였다더라도 수익자의 하자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개설은행이 하자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 거절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미국 법원은 단순하게 신용장통일규칙의 실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Song, 2014).

그러나 이미 언급한 Hamilton Bank N.A. v. Kookmin Bank (2001)사건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실권규칙을 인정하여 미국 법원은 개설은행이 하자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재제시에도 실권규칙 적용

ISP98 5.03조 a항에서는 개설은행은 재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였다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R328(UCP500)에서는 개설은행이 재제시에 대하여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2004) 사건에서 개설은행(외환은행)은 지급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확인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에 서류의 하자 사항을 명시하면서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 확인은행은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개설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개설은행은 재제시된 서류가 일치하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상황에서 개설은행은 첫 번째 지급거절 통지에 기재된 유효한 하자가 재제시에서 보완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명시하여 재제시 서류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은 유효기일과 선적일 후 서류제시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서류 하자를 보완하여 재제시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수익자 또는 제시은행이 재제시한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수익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를 명시한 지급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재제시가 새로운 하자를 발생시킨다면, 지급거절의 사유가 되는 새로운 하자를 제기할 수 있다. ISP 98과 달리 UCP600과 URDG758에서는 재제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적절하게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엄격 일치 개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UCP600, URDG758 및 ISP98은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처리과정과 관련된 실권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단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게만 적용하였다.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엄격일치의 기준을 적용하고,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적시의 완전한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Barne, Byrne and Boss, 1998).

실권규칙은 신용장거래의 확실성, 민첩성, 단순성 및 최종성을 위한 것이다. 개설은행이 일정 기간 내에 지급거절 통지를 하고 받은 서류를 그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용장이 주는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권규칙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매우 불리한 규정이지는 않지만 신용장의 대원칙인 “pay first, argue later”가 “argue first, pay later”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서류 반환의무 불이행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지급거절 후 제시 받은 서류를 그대로 반환하지 못하면 실권규칙이 적용되어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9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ICC 은행위원회의 ICC Opinion TA.891rev R.905에서는 수익자가 제시한 원래 서류의 반송과 관련하여 결정하였다. 제시은행은 개설은행에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개설은행은 모든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원래 서류의 일부와 원래 서류의 복사본을 반환하였다(2매의 선하증권 원본 중 1매만 반환되고, 나머지는 원선하증권의 복사본을 반환하였다). ICC 은행위원회는 개설은행은 서류가 불일치하다는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ICC의 결정을 부인한 중국 판례도 있다

(Yan, 2017). 중국의 Kingho International Corporation Limited v. China Everbright Bank Hongzhou Branch (2013) 사건에서 Wuhan Intermediate People's Court는 개설은행은 제시은행이 제시한 선하증권 원본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첫 쪽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시은행에 반환하였으나 개설은행에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에 개설의뢰인이 선하증권 원본을 가지고 이미 물품을 선사로부터 수취하여 선하증권 원본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었고, 신용장에서 선하증권 수하인으로 개설은행 지시식(to order of issuing bank)으로 요구하였으나 제시된 선하증권의 수하인은 지시식(to order)으로 기재되어 개설은행이 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항소심에서 Hubei Province High People's Court는 1심 법원과는 다르게 제시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개설은행이 그대로 반송하지 못하였으므로 UCP600 제16조 e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설은행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비록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시 UCP600 제16조 e항의 서류반송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이것이 개설은행이 절대적으로 지급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개설은행이 제시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설의뢰인에게 하자 있는 서류를 인도한 사례도 있다. 당연히 개설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이것은 개설은행 담당자가 신용장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개설의뢰인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지되어야 할 행위이다(Mansoor, 2020).

V. 결론

UCP600 제16조에서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서류 접수 5은행영업일 이내에 telecommunication

으로 지급거절 사실, 서류의 모든 하자 사항과 서류 처분상황을 기재한 지급거절 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거절 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서류를 처분하지 않으면 서류 하자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실권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UCP600 제16조의 실권규칙은 개설은행에 매우 불리한 규정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서류 하자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개설은행이 수입물품을 매각하여 신용장대금 전액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져 개설은행 실무자가 변상해야 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이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하자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서 실권규칙이 적용된 판례가 있다. 이것은 해당은행 실무자의 UCP600 제16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할 때 하자 사항을 통지하였는데, 이 하자가 사소한 하자에 해당되어 지급거절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중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개설은행에 상당한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설의뢰인이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게 되면 개설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로 지급거절을 할 때에는 개설은행의 본점 부서에서도 서류심사에 함께 참여하여 하자사항 기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UCP600 제16조 e항에서 개설은행은 언제든지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를 반송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

게 반송하여 수익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UCP600 제16조의 실권규칙은 개설은행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입장이 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상대방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 거절하였는데 UCP600 제16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개설은행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수익자는 서류상 하자로 일단 지급거절을 당하였다더라도 신용장 유효기일과 선적일 후 서류제시기일 이내에 하자를 보완하여 개설은행에 다시 제시하면 정상적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장 유효기일은 여유가 있으나 선적일 후 서류제시기간이 10일 정도에 불과하면 이 제한시간이 경과하여 수익자의 하자 보완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수익자 제시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개설의뢰인이 해당 물품이 필요하면 컨리포기를 하여 수익자는 신용장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물품 가격이 하락하면 개설은행 또는 개설의뢰인이 서류 하자를 빌미로 지급을 거절하므로, 물품 가격의 변동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수익자가 서류 준비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실수로 서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보완에 시간적 여유가 있도록 신용장에서 유효기일과 선적일 후 서류제시 기간을 넉넉하게 설정 받는 것이 좋다.

신용장거래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신용장은 대부분 종이로 된 서류거래가 일반적이므로 무역회사 및 은행의 신용장 실무자는 신용장통일규칙,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판례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vidon, M. E. (2011), "A US Perspective on the New URDG758 Compared to ISP98, UCP600, and the NY UCC",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16, 44-50.

- Barnes, J. G. (2020), "Survey- Uniform Commercial Code", *Business Lawyer*, 75, 2679.
- Barnes, J. G., J. E. Byrne and A. H. Boss (1998), *The ABC of the UCC, Article 5: Letter of Credit*, Philadelphia, U.S.A.: American Bar Association.
- Byrne, J. E. (1998), "Letter of Credit: 1996 Cases",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3, 15-20.
- Byrne, J. E., V. M. Maulella C. S. Soh and A. Zelenov (2010),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Montgomery Village, U.S.A.: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 Byrne, J. E., M. J. Kozakowski and J. B. Berger (2018), *UCP600: An Analytical Commentary 2018 Supplement*, Montgomery Village, U.S.A.: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 Byren, J. E. (2021), "§5-108: 18 Disposition of Presented Documents", *Hawkland UCC Series §5-108*, 6, 18.
- Ellinger, R. and D. Neo (2010),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Portland, U.S.A.: Hart Publishing.
- Fox, S. and R. Shour (2011), "Implied Obligation under Article (16)(F) of UCP 600 to Return Rejected Documents Reasonably Promptly",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16, 119-120.
- Fung, K. T. (2008), *UCP600 Legal Analysis and Case Studies*, Hong Kong: P.E.E.R Consultancy Ltd.
- Gotoh, M. and H. Yoshino (2008), *Uniform Rules for Documentary Credit Q&A*, Tokyo: Central Economics.
- Ha, Hyun-Soo (2017), "A Case Study on Refusal of L/C Payment in Accordance with Violation of Notification against Discrepancy by Issuing Bank",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8(4), 321-342.
- Han, Ki-Moon and Sae-Woon Park (2013), "A Study on Preclusion Rule on Letter of Credit Ope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4(1), 94-117.
- Hei, Z. (2019), "Preclusion under ICC Rules: A Chinese Perspective", *Documentary Credit World*, 23(10), 45-51.
- Hoque, A. N. (2016), "An Alternative on Status of Documents under Sub-Article 16(iii) (B)",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1, 53-55.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7), *Commentary on UCP600*, Paris, France: Author.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2),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Paris, France: ICC Publishing S. A.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9),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2005-2008*, Paris, France: ICC Publications.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2),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2009-2011*, Paris, France: ICC Services Publication Department.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7),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2012-2016*, Paris, France: ICC Services Publication Department.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8),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2017*, Paris, France: ICC Services Publication Department.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20),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2018-2019*, Paris, France: ICC Publication Department.
- Kim Han-Soo and Park, Sae-Woon (1992), *Cases on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Exchange*, Seoul, Korea: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e.

- LC Market Intelligency Survey (2006), “DC-Pro 2005 LC Market Intelligency Survey”,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11, 230-248.
- Lee, Jung-Sun (2017), “Payment Refusal against Discrepancy in Transport Document under L/C Transaction”, *Korea Trade Review*, 42(2), 205-225.
- Mann, R. J. (2000), “The Role of Letters of Credit in Payment Transactions”, *Michigan Law Review*, 98(8), 2494-2536.
- Mansoor, A. (2020), “ Discrepant Documents Released to Applicant without Payment or Approval”, *Documentary Credit World*, 24(8), 43- 46.
- Park, Sae-Woon (2014), “A Study on Payment Refusal of the Issuing Bank under L/C”,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0(5), 937-955.
- Park Sae-Woon and Jung Yong-Heyuk (2017), *UCP 600 and International Trade Rules*, Seoul: Korea Banking Institute.
- Song, C.-S. T. (2014), “Is the Preclusion Rule under UCP 600 Sub-article 16(F) an Absolute Rule?”,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19, 179-189.
- Wang, J. (2018), “Disposition of Documents Dishonoured in UCP 600: Part I”, *Banking Law Journal*, 135(10), 607-612.
- Wang, J. (2019), “Disposition of Documents Dishonoured in UCP 600: Part II”, *Banking Law Journal*, 136(1), 37-40.
- Zhang, N. (2009), “Unconditional Notice of Refusal”,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4, 324- 332.
- Yan, Z. (2017), “How Two Chinese Courts Interpreted UCP600 Article 16”, *Documentary Credit World*, 21(9), 34-38.
- Amixco Asia (Pte) Ltd v. Bank Bumpiputra Malaysia Bhd, 2 SLR 943,947. (1992) Singapore.
- Amwest Surety Insurance Co. v. Concord Bank, U.S. Dist. LEXIS 10027; 248 F. Supp. 2d 867 (E.D. Mo.) (2003) U.S.A.
- Banker Trust Co. v. State Bank of India, Lloyds’s Rep. 443, (1991) U.K.
- Banker’s Trust Ltd. v. State Bank of India, 2 Lloyds’s Rep. 442 (C.A.), (1991) England.
- China New Era International Ltd. v. Bank China (H.K.) Ltd. (2010) 5HKC 82, (2010) Hong Kong.
- Cooperative Centrale Raiffeisen-Boerenleenbank BA v. Bank of China, Commercial Action No. 56 of 2001, (2001) Hong Kong.
- Credit Industriel et Commercial v. China Merchant Bank, C. L. C. 1263, (2002) England.
- Dickerson OL2 LLC v. Natixis, New York Branch, No. 652399/2018, 2019 WL 2299900 (N.Y. Sup. Ct. May 30, 2019), aff ‘d, 181 A. D.3d 481 (N.Y. App. Div. 2020) U.S.A.
- Emirates Bank Int’l PJSC V. Credit Lyonnais (Suisse) S.A. Swiss Supreme Court Reporter, Volume 130 Part III, p. 462, (2004) Switzerland.
- Export- 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v. United California Discount Corp. U.S. Dist. LEXIS 91170 (C. D. Cal. 2010) U.S.A.
- Federal Bank Ltd. v. VM Jog Engineering Ltd, 4 LRI 204 (Supreme Court of India), (2002) India.
- Fortis Bank v. Indian Overseas Bank, EWHC 84 (Comm), 2010 England.
- Habib Bank Ltd. v. Cent. Bank of Sudan, 2 Lloyd’s Rep. 412 (Comm. Ct. 2006) U.K.
- Hamilton Bank N.A. v. Kookmin Bank, 245 F.3d. 82 (2nd Cir.), (2001) U.S.A.
- Heritage Bank v. Redcom Laboratories, Inc. U.S. App. IEXIS9202;250 f.3d. 319 (5th Cir) (2001) U.S.A.

- Hick v. Raymond & Reid, AC 22, (1893) England.
- Hing Yip Hing Fat Co., Ltd. v. The Daiwa Bank Ltd., 2 HKLR 35, (1991) Hong Kong.
- Indoafric Exports Private LTD. v. Citibank, N.A. 696 F.APP'x 551 (2nd Cir.2017), (2017) U.S.A.
- Kingho International Corporation Limited v. China Everbright Bank Hongzhou Branch, E Wuhan Zhong Minshang Wai Chu No. 00014 of the Wuhan Intermediate People's Court, (2013) China.
- Kingho International Corporation Limited v. China Everbright Bank Hongzhou Branch, (2016) E Min Zhong No. 184 of Hubei Province Higher People's Court, (2016) China.
-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Suit No. 162 of 2004 (Register's Appeal No. 307 of 2004), (2004) Singapore.
- Labarge Pipee & Steel Co. v. First Bank, 550 F.3D 442 (5th Cir.), (2008) U.S.A.
- Lease American Corp. v. Norwest Bank Duluth, N. A. 940 F. 2d. 345 (8th Cir), (1991) U.S.A.
- MAM Apparel & Textile Ltd. v. NCL Worldwide Logistics USA, Inc.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D. New York, 2020 WL 4336362, (2020) U.S.A.
- Millennium Wires Ltd. v. The State Trading Corp. of India Ltd, Supreme Court of India Civil Appeal No. 3103 of 2015, (2015) India.
- Philadelphia Gear Corp. v. Central Bank, 717 F.2d 230, 238 (5th Cir), (1983) U.S.A.
- Philippine Commercial International Bank v. Korea Exchange Bank, Civil Case No. 99-350(Regional Trial Court Makati, Branch 60. 10/21/2011, (2011) Philippine.
- Rika Global Impex Ltd. v. Oriental Bank of Commerce, Calcutta H.C., GA No. 1842 of 2010, CS No. 145 of 2010, (June 17, 2010) India.
- Sale Continuation Ltd. v. Austin Taylor & Co Ltd., 2 Lloyd's Rep. 443, (1967) England.
- Seaconsar Far East Ltd. v. Bank Markazi Jonbouri Islam Iran, 1 Lloyd's Rep. 36, (1998) England.
- Swiss Singapore Overseas Enterprises Pte Ltd. v. China Citic Bank Corp. Ltd., Xiamen Branch, HKCU 1860, (2013) Hong Kong.
- Swiss Singapore Overseas Enterprises Pte Ltd. v. China Citic Bank Corp. HKCU 2994, (2014) Hong Kong.
- The Bank of East Asia (China), Da Lian Branch v. Da Lian Hui Feng Da International Trade Co. Ltd. Civil Shen Zi No.680, (2014) China.
- Total Energy Asia Ltd. v. Standard Chartered Bank (Hong Kong), HCCL 68/2002, (2006) Hong Kong.
- Toyota Tsusho Grp . v. Comerica Bank 929 F. Supp. 1065, 30 u.c.c. Rep. Serv. 2d. (CBC) 619 (E.D. Mich, (1996) U.S.A.
- Travelers Indem Co. v. U.S.Bank, N.A., 56 U.C.C. Rep. Serv. 2d (Callaghan) 786 (Conn. Super. Ct.), (2006) U.S.A.
- U.S. Bank National Ass'n v. Bankplus, 2010 WL 1416505 (S.D. Ala. Apr.2, 2010), (2010) U.S.A.
- Voest-Alpine Trading USA Corp. v. Bank of China, 288 F3d262 (5th Cir. 2002), (2010) U.S.A.